

2013학년도 제3차
<제306차 이사회 회의록>

2013. 6. 27.

학교법인 대우학원

학교법인 대우학원

2013학년도 제3차

〈제306차 이사회 회의록〉

구 분	이 사	감 사
임원정수	11 인	2 인
재적임원	11 인	2 인
참석임원	11 인	1 인

1. 일 시 : 2013. 6. 27(목). 07:30 - 08:55 (회의소집 통보일 : 2013년 6월 19일)

2. 장 소 : 포스코센터 라운지룸 (포스코 B/D 서관 19층)

3. 임원 출·결 사항

◎ 참석임원

- 이사 : 추호석, 윤성복, 안재환, 문길주, 신희택, 주인욱, 박상일, 신상협, 이영현, 최 홍, 김선용 (11인)

- 감사 : 배홍기 (1인)

◎ 결석임원

- 감사 : 전성훈 (1인)

4. 교·직원 출석사항

- 아주대학교 : 교무처장 박영동, 기획조정실장 탁승제 (2인)

- 법인사무처 : 팀장 임홍식, 심지훈 (2인)

5. 개회선언

이 사 장 : 재적이사 열한 분 중 열한 분 전원의 이사님이 참석하셨기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차 이사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6. 보고사항

이 사 장 : 회순에 따라 아주대학교의 주요현안 업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영동 교무처장이 주요현안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다.)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안재환

이사

이영현

이 사 장 : 그러면 회순에 따라 안전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7. 심의안전

상임이사 이영현 : 제306차 이사회 심의 안전은 학법대우 제13-121호(2013.6.19)로 통보한 내용 중 추가 검토가 필요한 아주대학교 직제규정 개정(안)을 제외한 의안 제1호 대우학원 정관 개정(안), 제2호 2013학년도 아주대학교 교원 신규·재임용 동의(안), 제3호 아주대학교 보직 임명 동의(안), 제4호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 승인(안) 등 4개의 안전을 상정하였습니다.

8. 심의내용

제 1 호 대우학원 정관 개정(안)

이 사 장 : 대우학원 정관 개정(안) 발의.

상임이사 이영현 : 정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정관변경 사항은 2012년 5월 제300차 이사회에서 승인된 수익사업장 북대구빌딩 매각과 관련하여 2013.4.2자로 처분이 완료되어 등기 이전됨에 따라 정관 제40조 제2호의 북대구빌딩 명칭 및 제41조 제2호의 북대구빌딩 주소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정관 제56조 제3항 “교원은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라는 규정과 관련하여 해당 재심위원회의 근거법령 및 설치기관이 변경됨에 따라 현행 법률에 맞게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근거법령으로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7조 및 제9조에 관련내용이 규정되어 있으며, 회의자료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사립학교법」,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연혁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하는 정관개정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자료 3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임원 자료를 보며 심의하다.)

이 사 장 : 원(안)에 대한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이 사 신 회 택 : 개정되는 정관내용에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 사 최 홍 : 원(안)에 재청합니다.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안재환

이사

이영현

이 사 장 : 원(안)에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참석이사 11인 전원이 원(안)에 찬성하다.)

이 사 장 : 그러면 대우학원 정관 개정(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11인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동의하였음을 가결합니다.

▣ 정관 개정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제40조 (수익사업의 명칭) 제39조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수익사업을 경영한다. 1. 부산 온천동 상가 2. <u>북대구 빌딩</u> 3. 군산 빌딩 4. 북성주차장 빌딩 5. (삭제 2012.7.9) 6. 원천동 주상복합빌딩 7. 원천빌딩	제40조 (수익사업의 명칭) 제39조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수익사업을 경영한다. 1. 부산 온천동 상가 2. <삭 제> 3. 군산 빌딩 4. 북성주차장 빌딩 5. (삭제 2012.7.9) 6. 원천동 주상복합빌딩 7. 원천빌딩
제41조 (수익사업체의 주소) 수익사업의 총괄사무소는 이 법인의 사무소 내에 두며, 제40조의 사업장의 주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산 온천동상가 :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1250번지 1-3호 2. <u>북대구빌딩 : 대구광역시 북구 칠산동 13-44번지</u> 3. 군산빌딩 : 전북 군산시 중앙로3가 54-3번지 4. 북성주차장 빌딩 : 대구광역시 중구 북성로1가 63번지 5. (삭제 2012.7.9) 6. 원천동 주상복합빌딩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38-26번지 7. 원천빌딩 :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29-89외 4 필지	제41조 (수익사업체의 주소) 수익사업의 총괄사무소는 이 법인의 사무소 내에 두며, 제40조의 사업장의 주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산 온천동상가 :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1250번지 1-3호 2. <삭 제> 3. 군산빌딩 : 전북 군산시 중앙로3가 54-3번지 4. 북성주차장 빌딩 : 대구광역시 중구 북성로1가 63번지 5. (삭제 2012.7.9) 6. 원천동 주상복합빌딩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38-26번지 7. 원천빌딩 :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29-89외 4 필지
제56조 (의사에 반한 휴직·면직 등의 금지) ①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제56조 (의사에 반한 휴직·면직 등의 금지) ① (현행과 같음)

< 간서명 란 >

이사장

추호석

이사

신지환

이사

이영현

현행	개정
<p>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 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p> <p>③ 교원은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u>재심위원회에 재심을</u> 청구할 수 있다.</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교원은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u>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u> 청구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u>부칙</u></p> <p style="text-align: center;">(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제 2 호 2013학년도 아주대학교 교원 신규·재임용 동의(안)

이 사 장 : 2013학년도 아주대학교 신규·재임용 동의(안) 발의.

교무처장 박영동 : 본교 임용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임용 대상자는 총 4명으로 조교수 3명의 전임교원과 부교수 1명의 비정년외국인교원이 되겠습니다. 재임용 대상자는 총 8명으로 조교수 7명의 전임교원과 조교수 1명의 비정년외국인교원이 되겠습니다. 다만, 7명의 전임교원 재임용 대상자 중 경제학과 김정호 조교수는 조건부 재임용 동의대상자로서, 현재 출판된 논문으로는 연구업적 기준에 미달하여 재임용 조건에 충족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6.30자로 논문이 게재될 예정이라는 게재예정증명서가 제출되었고, 만약 출판예정 연구실적 중 어느 하나라도 임용만료일인 8.31까지 출판되지 않을 경우 조교수직을 스스로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받아놓았습니다. 이에, 임용만료일 이내에 출판된 논문 원본을 제출하여야만 재임용하는 조건부로 해당 조교수의 재임용 동의를 요청 드립니다.

이외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 및 임용대상자의 연구실적과 이력내용 등은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임원 자료를 보며 심의하다.)

< 간사명란 >

이사장

추호석

이사

안

이시환

이사

이영현

이 사 장 : 원(안)에 대한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이 사 신 상 협 : 신규임용 대상자 중 기계공학과 이정일 조교수 대상자와 관련해서 교원인사위원회회의록을 보면 타 지원자에 비해 논문 수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일부 위원의 지적이 있습니다. 대학에서 박사 논문 수가 신규임용에 중요한 바로미터가 아닐까 싶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교무처장 박영동 : 지적하신대로 논문 수도 중요하긴 하지만, 요즘에는 논문 수보다는 얼마나 중요한 논문인지를 판단해 그에 대한 지표를 임용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사 신 상 협 : 회의록 내용 중 교육철학이 뚜렷하고 기존 교수들과의 협력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교무처장 박영동 : 기계공학과 같은 경우는 학과특성상 관련분야 및 학생 수가 많아 연구도 중요하지만 학생 강의에 대한 열정과 교육의지 등에 상대적으로 중점을 두고 있어 면접시 해당 학과에서 이 부분을 높게 반영하였습니다.

이 사 윤 성 복 : 이번 교원 신규·재임용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니긴 합니다만, 5.31자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 내용을 보면 법학전문대학원 이운제 부교수의 경우, 학기가 지나서 임용이 되었다하더라도 학기 초부터 강의 및 교원업무를 수행하면 해당 학기 전체를 임용기간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승진심사 기준에 예외적용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교무처장 박영동 :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자문을 받았습시다. 본교에 최초 2007.9.1자로 임용되고 그 후 전 소속기관인 법무부에서 사표수리가 지연되어 2007.9.14자로 임용일이 변경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승진 소요연수에서 13일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 윤 성 복 : 어쨌든 학교에서 임용한 날짜와 임용기간이 있는데 임용날짜 이전에 채용한 것으로 한다는 내용의 결의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적인 문제가 제기되면 그게 가능한지 의문입니다.

이 사 박 상 일 : 제 생각에도 그것이 가능하다고 동의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표수리 시까지는 법무부 소속 공무원 신분으로 거의 2주간 겸직이 된다는 것인데 비록 9.1자부터 강의를 하였다하더라도 임용날짜에 맞게 승진 소요 연수가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민간기구라면 예외가 있을 수 있겠지만 공무원의 경우 겸직금지 규정이 있는데 지연기간 동안 겸직된 것으로 행정처리가 되면 전 소속기관이었던 법무부 측과도 그 부분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심의 안전은 아니지만, 다음 이사회에 승진임용 동의 요청시 이 기간 문제는 학교에서 해결이 되어서 올라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사 신 희 택 : 승진기간에 관한 사항은 너무 명시적인 부분이라서 자문 받은 법률적인 의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장 안 의환

이사 이영현

견서를 첨부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법률의견 내용이 임용기준 시점으로 승진되는 것으로 의견을 잡고 검토를 했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점들을 좀 더 분명하게 해 놓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 등에서도 가장 형식적으로 지적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 사 장 : 여러 이사님들께서 의견을 주셨는데, 승진임용에 관한 내용이라 오늘 본 의안을 결의하는 것에는 현재 지장이 없는 관계로 문제제기 하는 수준 정도로 하고 법학전문 대학원 이윤제 부교수에 대한 사항은 차기 이사회에서 승진임용 동의가 있을 경우 다시 논의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학교에서는 다시 한 번 이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교 4명의 신규임용 및 8명의 재임용 동의 원(안)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 사 신 상 협 : 그 외 나머지 특이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 사 문 길 주 : 원(안)에 재청합니다.

(참석이사 11인 전원이 원(안)에 찬성하다.)

이 사 장 : 다음으로 의료원 임용 동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탁승제 : 의료원의 전임교원 재임용 대상자는 각각 약리학교실, 외과학교실, 정형외과학교실 소속의 조교수 3명입니다. 재임용 대상자는 모두 연구업적 등 임용기준을 충족 하였습니다. 임용대상자의 연구실적과 이력내용 등은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임원 자료를 보며 심의하다.)

이 사 장 : 아주대학교의료원 임용 동의(안)에 의견 있으십니까?

이 사 주 인 옥 : 해당교원 이력서 및 연구실적카드 등을 살펴보니 괜찮아 보입니다. 전체 적으로 의료원의 전임교원 재임용 심사에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 사 김 선 용 : 원(안)에 재청합니다.

이 사 장 : 원(안)에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참석이사 11인 전원이 원(안)에 찬성하다.)

이 사 장 : 그러면 아주대학교 교원 신규·재임용 임용 동의(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 이사 11인 전원의 찬성으로 아주대학교 본교 총 4명의 신규임용 및 조건부 재임용 1명 포함 총 8명의 재임용에 대해 원(안)과 같이 동의하였음을 가결합니다. 그리고, 의료원 또한 참석이사 11인 전원의 찬성으로 총 3명의 재임용에 대해 원(안)과 같이 동의하였음을 가결합니다.

▣ 아주대학교 교원 임용 동의 내용

< 간서명란 >

이사장

추호석

이사

신재환

이사

이영현

가. 신규임용

소 속	성 명	임용직급	임용기간
기계공학과	이 정 일	조교수	2013.9.1 - 2016.8.31 (3년)
약 학 과	신 수 영	조교수	2013.9.1 - 2016.8.31 (3년)
약 학 과	전 상 민	조교수	2013.9.1 - 2016.8.31 (3년)
경영학과	Stephen W. Moore	부교수	2013.9.1 - 2015.8.31 (2년)

- 이상 4명 -

나. 재임용

소 속	성 명	임용직급	임용기간
경영학과	김 승 환	조교수	2013.9.1 ~ 2016.8.31 (3년)
국어국문학과	곽 명 숙	조교수	2013.9.1 ~ 2016.8.31 (3년)
국어국문학과	조 하 연	조교수	2013.9.1 ~ 2016.8.31 (3년)
사 학 과	이 상 국	조교수	2013.9.1 ~ 2016.8.31 (3년)
약 학 과	노 민 수	조교수	2013.9.1 ~ 2016.8.31 (3년)
대학원 에너지시스템학과	김 환 명	조교수	2013.9.1 ~ 2016.8.31 (3년)
경제학과	김 정 호	조교수	2013.9.1 ~ 2016.8.31 (3년)
법학전문대학원	Christopher Salatiell	조교수	2013.9.1 ~ 2014.8.31 (1년)
약리학교실	서 영 호	조교수	2013.9.1 ~ 2016.8.31 (3년)
외과학교실	김 지 훈	조교수	2013.9.1 ~ 2016.8.31 (3년)
정형외과학교실	조 재 호	조교수	2013.9.1 ~ 2016.8.31 (3년)

- 이상 11명 -

제 3 호 아주대학교 보직 임명 동의(안)

이 사 장 : 아주대학교 보직 임명 동의(안) 발의.

이 사 장 : 본 안건은 아주대학교 보직 중 병원 행정부원장을 새롭게 선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그 동안 수고하신 김윤기 행정부원장 후임으로 외부 전문경영인인 박재호 대표이사를 추천하고자 합니다. 신규 보직임명 대상자인 박재호 대표이사는 (주)대우 경리부장, (주)대우인터내셔널 이사부장, 한일IT경영협의회 부회장, (주)와이즈넷 CFO를 거쳐 (주)와이즈넷 대표이사를 역임하셨습니다. 향후 아주대학교의료원 발전에 크게 기여할 분으로 생각되어 박재호

< 간서명란 >

이사장

추 호 석

이사

박 재 호

이사

이 영 현

대표이사를 병원 행정부원장에 선임하고자 임면사항에 대한 동의를 요청 드립니다. 자세한 이력내용은 첨부된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임원 자료를 보며 심의하다.)

이 사 장 : 현재 행정부원장이 무슨 하자나 문제가 있어서 면직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원에 변화를 가져오려고 하는 의미에서 총장·의료원장과 의논을 해서 보직 임명 동의(안)을 상정하였습니다. 병원에서는 조금 우려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오랫동안 병원의 내부적인 사정을 잘 아는 분이 행정을 맡아 주는 것이 안정적이라 여겨질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 오시는 분에 대한 검증이 안됐으니까 걱정되는 부분이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새로운 시각으로 의료원 행정을 보고 변화를 모색하자는 의미에서 새로운 행정부원장을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원(안)에 대한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이 사 문 길 주 : 그럼 기존의 행정부원장은 어디로 가지게 됩니까?

이사(총장) 안재환 : 학교 총장직속 산하에 학교 발전을 위해 모금업무를 담당하는 발전본부가 있습니다. 동문과의 유대가 많이 요구되는 부서인데, 원래 학교에서 총무부처장으로도 계셨을 뿐만 아니라 아주대학교 졸업생이시기도 해서 적임자라 생각되어 해당부서의 부서장으로 제청할 계획입니다.

이 사 신 희 택 : 새로운 행정부원장으로 추천되신 분의 이력을 살펴보니 훌륭한 분으로 생각됩니다.

이사(총장) 안재환 : 기존 행정부원장이 의료원 발전을 위해 열정을 갖고 많은 노력을 해주셨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요즘 병원 경영이 상당히 어려워짐에 따라 새로운 시각과 변화가 필요한 부분도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사 신 상 협 : 동문 사회에서도 김윤기 행정부원장에 대한 평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정기인사 시즌이 아닌 시점에서 갑작스레 바뀌는 것에 대해 당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관련 인사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 사 장 : 기존에 있는 분들로도 좋은 변화와 영향을 가져올 수 있긴 하겠지만, 사람이 한 번 바뀌면 그에 따라 또 다른 변화가 긍정적으로 올 것이라 기대합니다.

이 사 신 희 택 :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 사 신 상 협 : 원(안)에 재청합니다.

이 사 장 : 원(안)에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참석이사 11인 전원이 원(안)에 찬성하다.)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안재환

이사

이영현

이 사 장 : 그러면 아주대학교 보직 임명 동의(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11인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의 내용과 같이 행정부원장 보직 임면에 대해 동의하였음을 가결합니다.

▣ 아주대학교 보직 임명 동의 내용

보 직 명	임 면	소 속	직 급	성 명	일 자
행정부원장	면 직	아주대학교 의료원	일반직 3급	김 윤 기	2013.06.30
	임 명	-	-	박 재 호	2013.07.01

제 4 호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 승인(안)

이 사 장 :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 승인(안) 발의.

상임이사 이 영 현 : 의안 제4호는 본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중 일부인 예금 145억원에 대한 처분을 승인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수익용 기본재산 중 해당 기본재산의 형태를 바꾸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처분으로 보아 사립학교법 제28조에 의거 관할청인 교육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익용 기본재산의 일정 부분을 안정성 위주의 예금으로 확보하면서 운용을 하고 있는데, 경기침체에 따른 저금리 정책이 지속되면서 예금이자 수익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안전성과 수익성을 겸비한 채권 투자를 검토 중인데 유가증권으로 분류되는 채권을 대체취득하기 위해서는 교육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금리가 수시로 변동되는 채권시장에서 적절한 시점에 즉각적인 매매를 위해서는 처분할 예금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승인을 미리 받아 두고자 처분 승인(안)을 상정케 되었습니다. 「사립학교법」 제32조의2 제3항에 따르면 적립금의 2분의 1의 한도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증권의 취득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해당 예금을 처분하여 대체취득 하더라도 유가증권으로 예치 관리되는 기금은 전체 기금의 약 45% 정도로서 해당 법령을 준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83쪽 최근 발행 회사채 금리를 보면 신용등급에 따른 금리수준이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사실 채권도 리스크를 수반하는 상품이므로 금리수준이나 리스크 정도에 따라 투자자채도 전면 재검토될 여지도 있지만, 본 수익용 기본재산 예금 처분(안)을 승인해 주시면 면밀히 검토해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신중하게 투자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임원 자료를 보며 심의하다.)

< 간 서 명 란 >

이사장 추 호 석 이사 안 재 환 이사 이 영 현

이 사 장 : 원(안)에 대한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이 사 윤 성 복 : 이렇게 결의를 하더라도 처분하지 않고 예금으로 둘 수도 있는 겁니까?

상임이사 이 영 현 : 네, 그렇습니다. 일단 안전자산으로 투자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 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를 더 확보하려는 취지입니다.

이 사 최 홍 : 최근에 전체적으로도 채권금리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감안할 경우 추가적으로 금리가 더 많이 오르는 힘들어 보이기 때문에 매매 타이밍 상으로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사채 부분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회사채는 금리 자체가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지만, 최근 유동성 문제가 대두되고 경색이 좀 나타나기 때문에 금리차이가 크고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는 이상 회사채는 조심해서 매입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채권시장을 보았을 때, 최근 몇 년간 보지 못한 현상으로 금리가 0.7~0.8%p 이상 올라 있는 상태로 채권 매입시기로는 그렇게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이 사 장 : 안전하게 가져간다면 정기예금이 가장 좋을 것이고, 좀 리스크를 안고 운용을 하는 방법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겠지만, 하버드 대학 같은 경우 높은 수익률을 올리고 있는 것도 참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사 최 홍 : 미국에서 대학 기금들이 헤지펀드보다 높은 수익률을 올리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코노미스트에 보면 이렇게 높은 수익률을 올리는 가장 큰 이유는 대학기금들은 만기가 없이 오랫동안 장기투자를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른 펀드들은 만기가 되면 상환해야 하는 제약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나쁘면 버텨내질 못합니다. 펀드 자체가 조성된 목적과 기한이 있어서 시장에 대한 믿음이 있다할지라도 그 기간 내에 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반면, 하버드나 예일대학의 경우 수익률이 가장 좋은 편인데 이는 그 펀드매니저들이 잘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그들이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한에 제한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근본적인 이유라고 합니다. 만약 국내 대학도 이를 감내하고 갈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면 리스크를 가져가는 것도 조금 더 전략적인 차원에서 해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 장 : 큰 리스크에는 투자를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만, 만약에 좋은 상품이 나타나서 투자를 한다면 실무적인 검토 뿐만 아니라 여러 이사님들과 의논해서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 윤 성 복 : 절차나 투자에 조심스런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투자가능 범위를 넓혀 두고, 시장상황에 따라 신중하게 투자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라면 결의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 사 최 홍 : 원(안)에 재청합니다.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안재환

이사

이영현

이 사 장 : 원(안)에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참석이사 11인 전원이 원(안)에 찬성하다.)

이 사 장 : 그러면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11인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합니다.

▣ 수익용 기본재산(예금) 처분 승인(안)

가. 매각처분 대상(예금) 현황

(단위 : 원)

기관명	예치일	만기일	이자율	금액	비고
NH농협	'13.01.14	'13.07.14	3.23%	2,000,000,000	
NH농협	'13.01.21	'13.07.21	3.20%	1,900,000,000	
기업은행	'13.02.22	'13.08.22	3.12%	5,000,000,000	
우리은행	'13.02.22	'13.08.22	3.11%	711,470,000	
기업은행	'13.02.21	'13.08.23	3.12%	4,406,000,000	
기업은행	'13.03.05	'13.09.05	3.07%	500,000,000	
처분금액			3.14%	14,517,470,000	평균이자율

나. 처분예정금액 및 처분금의 용도

- ▶ 처분예정금액 : 14,517,470,000원
- ▶ 처분금의 용도 : 수익용기본재산(유가증권) 대체취득

9. 회의록 간서명 대표자 선임 의결

이 사 장 : 제306차 이사회 회의록 간서명 대표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이사님들께서는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 박 상 일 : 이사장님과 안재환 이사님 그리고 이영현 이사님을 선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석임원 11인 전원이 박상일 이사의 의견에 찬성하다.)

이 사 장 : 그러면 사립학교법 제18조의2에 의거 이사회 회의록 간서명 대표자로 이사장 추호석, 이사 안재환, 이사 이영현을 참석임원의 호선으로 선임하였음을 의결합니다.

< 간서명 란 >

이사장 추 호 석 이사 안 재 환 이사 이 영 현

10. 폐회선언

이 사 장 : 이상과 같이 상정안전에 대한 심의를 마쳤으므로 제306차 이사회의 폐회를 선언합니다.

(8시 55분에 산회를 선포하고 위 의결사항을 증명하기 위하여 참석임원 전원이 회의록에 자필로 서명하다.)

2013년 6 월 27 일

이사장	추 호 석	추호석
이 사	윤 성 복	윤성복
이 사	안 재 환	안재환
이 사	문 길 주	문길주
이 사	신 희 택	신희택
이 사	주 인 옥	주인옥
이 사	박 상 일	박상일
이 사	신 상 협	신상협
이 사	이 영 현	이영현
이 사	최 홍	최홍
이 사	김 선 용	김선용
감 사	배 홍 기	배홍기